

실비보상규정

제정 2012. 09. 27.

개정 2014. 10. 21.

개정 2017. 06. 13.

개정 2018. 01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(이하 “융합원” 이라 한다)의 사업추진과 직장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 위원에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수당 등) 융합원 소속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융합원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“별표 1” 또는 “별표 2”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이사 및 감사 및 총회 회원, 운영위원회 위원
2.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
3. 직원 교육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
4.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현장지원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전문가
5. 기타 융합원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시책 참여자

제4조(여비) ① 위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 30조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당에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를 소속 기관의 직급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 할 수 있다.

부 칙(2012.09.27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4.10.21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06.13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01.23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실비보상기준

실비보상기준

| 구 분 | 지 급 액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1. 이사회 참석수당 | 200,000원 | |
| 2.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| 100,000원 | |
| 3. 외부전문가 등 | 100,000원 | |

※ 단,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2회 차에서부터 규정액의 50%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2] 강사료 지급기준

강사료 지급기준

| 구 분 | 지 급 기 준 | 지 급 액 | 비 고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원고료 | 원고지 1매(200자) | 5,000원 이하 | | |
| | PPT 1매 | 10,000원 이하 | | |
| | A4 용지 1매(80칸, 25줄) | 20,000원 이하 | | |
| 강사료 (1시간 기준) | 1급 | 기관장, 저명인사 | | 2,000,000원 이하 |
| | 2급 | 책임급 | | 200,000원 이하 |
| | 3급 | 선임급 | | 150,000원 이하 |
| | 4급 |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| | 100,000원 이하 |
| 평가 수당 | 1일 4시간 이상 | 300,000원 이하 | | |
| | 1일 4시간 미만 | 200,000원 이하 | | |
| | 위원장 수당(1일 기준) | 40,000원 이하 | | |
| 자문료 | 1일 기준 | 250,000원 이하 | | |
| 여비 |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않는 경우 (1일 기준) | 100,000원 이하 | | |